

수 의 사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반려산업동물의료과)

1. 개정이유

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「수의사법」이 개정(법률 제21623호, 2026.5.12. 공포, 11.13 시행)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「동물보호법」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세부사항 규정(안 제20조의4)

○ 수의사 심리지원 전담의료기관 설정*, 절차 및 방법 설정

*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으로 하고,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4(심리지원의 절차·방법 등)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
2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
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리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심리지원(이하 “심리지원”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1.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
2. 위임 또는 위탁의 내용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심리지원을 할 경우 신청자에게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당 전담의료기관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0조의4(심리지원의 절차·방법 등)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</u> <u>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</u> <u>2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</u> <u>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리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</u> <u>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심리지원(이하 “심리지원”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</u> <u>1.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</u>

<u>제20조의4 · 제20조의5</u> (생략)	<u>2. 위임 또는 위탁의 내용</u> <u>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심리지원</u>을 할 경우 신청자에게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당 전담의료기관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</u> <u>제20조의5 · 제20조의6</u> (현행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와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652, 2653